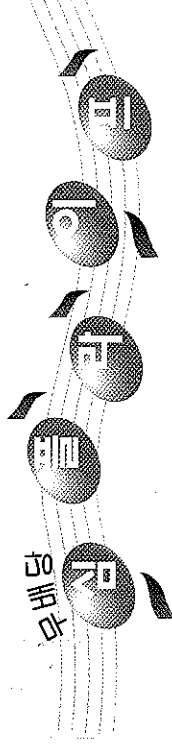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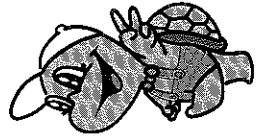


1년만기 자동갱신부

제정경제권 보험 45421-242 ('96. 8. 13)  
판매계약일자 : '96. 12.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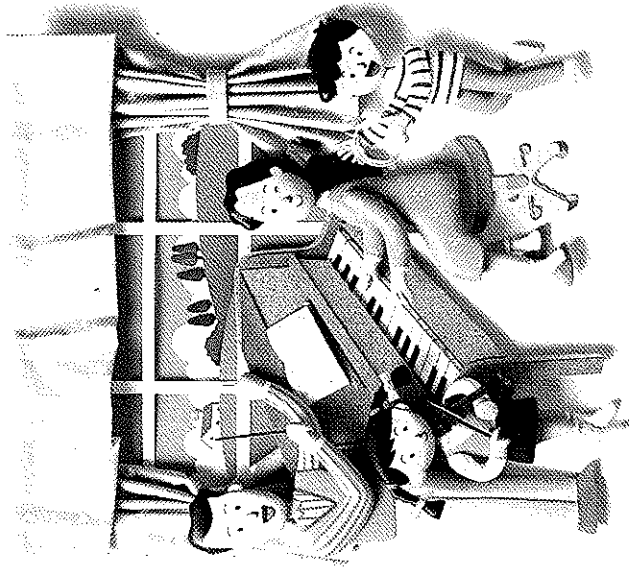


· 악 · 관 ·



**신한생명보험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130(신한은행본점8/D 19층)  
전화 : 775-4000(代) FAX : 777-4858



신한생명  
신철하고 믿음주는

## 목 차

|                      |   |
|----------------------|---|
| ■ 보험금 지급내용           | 2 |
| ■ 보험약관               | 3 |
| 무배당 신플라이프보장보험 보통보험약관 | 5 |

보통금 지급내용

● 지급내용

기준 : 보통가입금액 1,000만원

| 금 부 명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
| 유일재해<br>사망보험금   | "휴일"에 재해로 사<br>망하거나 제1급 장애<br>상태시   | 1억원                                                                                          |
| 재<br>해<br>사망보험금 | "휴일" 이외에 재해<br>로 사망하거나 제1급<br>장애상태시 | 5,000만원                                                                                      |
| 일<br>반<br>사망보험금 |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br>사망하거나 제1급<br>장애상태시   | 1,000만원                                                                                      |
| 장해소득<br>보상급여금   | 재해로 장애분류표중<br>제1급 내지 제6급의<br>장애상태시  | · 1~2급 : 매월 50만원씩 120개월 확정지급<br>· 3~4급 : 매월 30만원씩 120개월 확정지급<br>· 5~6급 : 매월 20만원씩 120개월 확정지급 |
| 재해임원<br>급여금     | 재해로 인하여 4월이<br>상 임원시                | 3월초과 1일당 10,000원                                                                             |

※ 휴일 : 「노동일」과 「공공자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

보통금 약관

1. 무배당 상품라이프보장보험 보통보험약관 ..... 5

## 목 차

### 무배당 심플라이프보장 보통보험약관

|                             |    |
|-----------------------------|----|
| 제 1조 [보험계약의 성립]             | 5  |
| 제 2조 [계약의 효력]               | 5  |
| 제 3조 [회사가 제정한 보험안내장 등의 효력]  | 6  |
| 제 4조 [보험기간]                 | 6  |
| 제 5조 [계약 불성립시의 보험료 반환]      | 6  |
| 제 6조 [약관교부 및 중요한 내용의 설명의무]  | 6  |
| 제 7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 6  |
| 제 8조 [대표자의 지정]              | 7  |
| 제 9조 [계약의 무효]               | 7  |
| 제 10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7  |
| 제 11조 [추밀의 정의]              | 9  |
| 제 12조 [배당금의 지급]             | 9  |
| 제 1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 9  |
| 제 14조 [전환 기한변환시의 보험금]       | 10 |
| 제 15조 [가입자의 고지의무]           | 10 |
| 제 16조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 10 |
| 제 17조 [보험료의 납입]             | 11 |
| 제 18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 11 |
| 제 19조 [주소변경 통지]             | 11 |
| 제 20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계약의 효력]   | 11 |
| 제 21조 [보험상신회 계약의 부활]        | 12 |
| 제 22조 [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       | 12 |
| 제 23조 [보험금등의 지급]            | 12 |
| 제 24조 [계약의 매년 자동갱신 지급]      | 13 |
| 제 25조 [보험금 수령방법의 선택]        | 13 |
| 제 26조 [계약내용의 변경]            | 13 |
| 제 27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 14 |
| 제 28조 [계약내용의 교환]            | 14 |
| 제 29조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 14 |
| 제 30조 [분쟁의 조정]              | 14 |
| 제 31조 [관할법원]                | 14 |
| 제 32조 [보험보통금의 지급보장]         | 14 |
| 제 33조 [준거법]                 | 14 |

## 무배당 심플라이프보장 보통보험약관

### 제 1조 [보험계약의 성립]

-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이루어 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 으며,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이내 에 그 청약을 철회(撤回) 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과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진단을 받지 아 니하는 계약이하 “무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 이하 “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진단일로 부터 30일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 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이내에 승낙 또 는 거절의 일림이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보험료의 납입방법을 금융기관(은행, 국, 포함의 해당계좌)을 통한 자동납입으로 가입(이하 “자동납입 가입”이라 함 니다)하거나 신용카드회사를 통하여 가입(이하 “신용카드 가입”이라 합니다)하 고자 하는 경우에 회사는 청약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승낙 또는 거 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금융기관의 해당계좌 또는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제1회 보험료를 받고 보험증권을 교부합니다. 이 경우 30일이내에 승낙의 알 림이 없으면 거절된 것으로 봅니다.

### 제 2조 [계약의 효력]

-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납입 가입의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자동납입한 날, 신용카드가입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회사가 지정한 제1회 보험료 매출 발생일, 이하 같습니다)로부터 이 약관이 정 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이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책임개시일”이라 하 며, 책임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봅니다.)
- ② 회사가 청약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책임개시일로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 임을 집니다.
- ③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제15조(가입자의 고지의무)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2. 제15조(가입자의 고지의무)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가 회사에 일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

항을 미청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 ④ 계약창약서에 피보험자의 자인 또는 자중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제1급 장애상태가 되었을 경우에 이 계약은 그 때로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제 3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 등의 효력]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모집인 등"이라 합니다)가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영업권,영업소 및 대리점 포함) 제작의 보험안내장(서류, 사진, 도화 등 모든 안내자료 포함)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합니다.

### 제 4조 [보험기간]

이 계약의 보험기간은 제2(계약의 효력) 제1항 또는 제2항에 정한 책임개시일로부터 1년으로 합니다.

### 제 5조 [계약 불성립시의 보험료의 반환]

- ①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드리고,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3월 이내에 그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②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제1항의 반환기일의 다음날로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약관대출이율로, 회사가 청약에 대한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 제 6조 [약관과부 및 중요한 내용의 설명의무]

-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 ② 계약자가 청약시까지 약관의 전달 및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것을 이유로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약관대출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 제 7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익자를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의 경우는 피보험자로 하고, 피보험자의 사망시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 제 8조 [대표자의 지정]

- ①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대표자가 지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소계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連帶)로 합니다.

### 제 9조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여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 2. 만16세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

### 제10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별표 1에서 정하는 "보험금 지급기준표"에 따라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1. 보험기간중 별표 2(제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 이외의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거나 제1급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 : 일반 사망보험금 지급
- 2. 보험기간중 휴일이외에 재해를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거나 제1급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 :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 3. 보험기간중 제11조("휴일"의 정의)에서 정한 휴일(이하 "휴일"이라 합니다) 외에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제1급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 : 휴일제해사망보험금 지급
- 4. 보험기간중 재해로 인하여 장애분류표중 제1급 내지 제6급의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 : 장애소득보상금 지급
- 5. 보험기간중 재해로 인하여 그 지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병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할 때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 하였을 때 : 재해입원보상금 지급
- ② 이 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장애분류표중 제2급 내지 제3급의 장애상태가 되었 때에는 차제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종신고(失蹤宣告)가 있거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할 때에

는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④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2항의 경우 장해상태의 등급이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80일이 되는날 현재의 장해진단을 기준으로 장해상태의 등급을 결정합니다.

⑤ 제1항 제5호의 경우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⑥ 제5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4일이상의 입원을 2회이상의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고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고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재해로 인한 입원이라도 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⑦ 제1항 제5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입원기간중에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그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도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계속 급여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⑧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이 유효한 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 재해로 인하여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⑨ 제1항 제4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기간중에 두종목 이상의 장해를 입었을 경우 그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소득보상급여금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최상위의 등급에 해당하는 장해소득보상급여금을 드립니다.

⑩ 제1항 제4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각각 다른 재해로 인하여 보험기간중 2회이상 장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장해소득보상급여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그 장해상태가 이미 장해소득보상급여금을 지급받은 동일부위에 가중된 장해일 경우 장해소득보상급여금의 지급사유가 이미 발생한 이후 새로운 상위의 장해상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0주년 도까지 매월 지급해야 할 금액을 일시지급액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이미 발생한 장해에 해당하는 각각의 장해소득보상급여금을 일시지급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차감하여 새로운 지급사유 발생일에 추가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⑪ 제9항에 있어서 그 재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다음중 한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부위에 또 다시 제10항에 규정하는 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에 대하여는 이미 장해소득보상급여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제10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1. 이 보험의 책임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장해로 장해소득보상급여금의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던 장해

2. 제1호 이외에 이 보험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소득보상급여금의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던 장해소득보상급여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장해

⑫ 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4호에서의 장해소득보상급여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두종목 이상 발생한 경우 다음의 (나)와 (다)를 합한 금액이 (가)보다 적은 때에는 (나)의 금액을 추가로 일시에 지급하여 드리며, (나)와 (다)를 합한 금액이 (가)보다 큰 때에는 (가)에서 (다)를 차감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로 일시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가) 최초의 장해상태가 발생한 시점에서의 제1급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소득보상급여금을 일시지급액으로 환산한 금액

(나) 새로운 발생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소득보상급여금을 일시지급액으로 환산한 금액

(다) 이미 발생한 장해에 해당하는 각각의 장해소득보상급여금을 일시지급액으로 환산한 금액

⑬ 제1항 제4호에서의 장해소득보상급여금은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제11조 【휴일】의 정의

이 계약에 있어서 “휴일”이라 함은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로 합니다.

#### 제12조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금리차보장금 포함)이 없습니다.

#### 제1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解除)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는 부활정액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지실하거나 자신을 해친으로 제1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전액을 다른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 제14조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드립니다.

#### 제15조 【가입자의 고지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서 포함) 청약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고지의무"라 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제1항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회사는 계약을 해지(解止)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상 지났거나 또는 최초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에는 1년)이상 지났을 때
  3.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통지를 한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4.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에 관하여 사실대로 알리지 아니한 경우 (청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승낙가질 직업 또는 직종은 제외)
  5. 모집인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 (청약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필로 서명한 경우는 제외)
- ③ 제2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해약환급금 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청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보험가입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보험가입한도액으로 감액하며, 그 초과가입액에 대한 보험료는 돌려드립니다.
- ⑤ 제1항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보험금을 드립니다.

#### 제16조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최초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 (건

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이상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 진단, 약물복용을 수인으로 진단결과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시기의사예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최초 책임개시일로부터 5년(내사기사실을 안 날로부터는 1개월)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17조 【보험료의 납입】

① 제2회 이후의 보험료는 납입기간중 계약자가 납입기일까지 납입해야 하며, 이 경우 회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단, 금융기관(우체국 포함)을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②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중 문서로 보험료의 납입방법 및 수금방법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에는 회사는 그 방법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 제18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수익자는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제19조 【주소변경 통지】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의 정한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 제20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계약의 효력】

① 제2회 이후의 보험료는 납입기일로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보험료 납입 유예기간(이하 "유예기간(猶豫期間)"이라 합니다)으로 하며, 계약자가 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치 아니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해약환급금은 없습니다.

② 보험료 수금방법이 회사의 방문수금 또는 계약자의 은행수납방법으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 회사의 수금불이행 또는 은행납입통지서의 미교부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납입기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이 계약은 계속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수금하기로 하거나 은행납입통지서를 다시 교부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수금 또는 다시 교부한 날로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기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④ 회사는 보험료 납입기간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제타인  
을 위한 보험의 경우 특정된 수익자 포함에게 유예기간이 끝나기 10일이전까  
지 제1항의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드립니다.

#### 제21조 【효력상실된 계약의 부활】

- ① 계약이 효력상실(效力喪失)되었을 경우 계약자는 효력상실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復活)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  
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에 예정이율+1%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부활되는 계약의 책임개시, 송납거절시의 보험료 반환 및 고지의무는 제1  
조(보험계약의 성립) 제3항, 제2조(계약의 효력), 제5조(계약불성립시의 보험료  
의 반환) 및 제15조(가입자의 고지의무)의 규정을 따릅니다.

#### 제22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  
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 (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등)
  3. 재해를 증명하는 서류 (재해로 인한 사망 또는 장해의 경우)
  4. 보험증권
  5. 주민등록증 복사 (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6.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 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제23조 【보험금등의 지급】

- ① 회사는 제22조(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  
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을 드리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  
우 지급서류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드  
리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제15조(가입자의 고지의무)와 관련하여 의  
료기관등에 대한 회사의 조사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익편대  
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 ④ 이 약관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없습니다.

#### 제24조 【계약의 매년 자동갱신】

- ① 회사는 보험기간의 만료일의 다음날(이하 “갱신일”이라 합니다)까지 계약자  
가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할 때, 이 계약은 자동갱신 되는 것으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자동납입의 경우에는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자동납입 응당일까지 납입하면 이 계약은 갱신일로 부터 자동갱신  
되는 것으로 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계약자는 이 계약의 갱신일의 전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보험료를 갱신일 전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④ 갱신계약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취급합니다.
  1.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 피보험자의 연령에 따라 계산된 보험  
료를 적용합니다.
  2. 제17조 (보험료의 납입), 제20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계약의 효력) 및 제  
21조(효력상실된 계약의 부활)의 규정은 갱신계약 보험료의 경우에도 존  
용하며, 갱신계약의 효력에 관해서는 제2조(계약의 효력)의 규정에도 불  
구하고 갱신일을 책임개시일로 합니다.
  - ⑤ 그러나,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의 만료일이전 제  
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은 자동갱신되지 않으며, 보험기간의 만료와 함께 종료되는 것으  
로 합니다.

#### 제25조 【보험금 수령방법의 선택】

-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후에는 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25조(보험금등의 지급) 규정에 의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이외에 다른 지급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후에는 수  
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 지급방법을 변경한 때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예정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 제26조 【계약내용의 변경】

-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려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가입금액
  2. 계약자 또는 수익자
  3. 기타 계약의 내용
-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해약환급금은 없  
습니다.







한글  
한글  
한글  
한글  
한글  
한글  
한글

| 문     | 답                                                             | 신 | 세 | 정 | 해 |
|-------|---------------------------------------------------------------|---|---|---|---|
| 제 4 급 | 8.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움직일 때                                   |   |   |   |   |
|       | 9.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움직일 때               |   |   |   |   |
|       | 10. 한손의 5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   |   |   |
|       | 11.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   |   |   |
|       | 12. 10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   |   |   |
|       | 13. 한발의 5발가락을 움직일 때                                           |   |   |   |   |
|       | 14. 한쪽의 상肢를 영구히 앓고 다른 쪽의 상肢를 영구히 움직일 때                        |   |   |   |   |
|       | 15. 좌측에 두꺼운 근육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   |   |   |   |
|       | 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상실한 때                                        |   |   |   |   |
|       | 2. 한발의 3대관절 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   |   |   |   |
|       | 3. 한발의 3대관절 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   |   |   |   |
|       | 4.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움직일 때                                  |   |   |   |   |
|       | 5.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을 움직일 때                       |   |   |   |   |
|       | 6.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3손가락을 움직일 때                          |   |   |   |   |
|       | 7.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   |   |   |
|       | 8.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   |   |   |
| 제 5 급 | 9. 한발의 5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   |   |   |
|       | 10. 한쪽의 첫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한가락 내지 4발가락을 움직일 때                       |   |   |   |   |
|       | 11. 두쪽의 엄지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   |   |   |   |
|       | 12. 한쪽의 상肢를 완전 영구히 움직일 때                                      |   |   |   |   |
|       | 13. 좌, 우 상肢를 각각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   |   |   |   |
|       | 14. 좌측에 운동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   |   |   |   |
|       | 1. 한손의 사지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   |   |   |   |
|       | 2. 한발의 3대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   |   |   |   |
|       | 3. 한발의 3대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   |   |   |   |
|       | 4. 한다리가 영구히 3cm 이상 단축되었을 때                                    |   |   |   |   |
|       | 5.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   |   |   |
|       | 6.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   |   |   |
|       | 7.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2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   |   |   |
|       | 8.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이외의 1손가락 또는 2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   |   |   |
|       | 9. 한발의 첫째발가락 또는 다른 4발가락을 움직일 때                                |   |   |   |   |
|       | 10.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3발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   |   |   |

- [illegible]

## 신체부의 설명도

경수를 말한다. 관절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인공관절 포함)에도 이에 준한다.

### 12. "팔다리 관절의 뚜렷한 장애"

팔다리의 각각의 3대관절의 운동 가능 영역이 생리학적 운동 가능영역의 1/3이하로 제한된 경우와 보행에 상당한 제한이 있는 통요관절의 경우를 말한다.

### 13. "척추의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애"

가. "척추의 뚜렷한 기형"

부상의 회복을 좌우한다든 외부로부터 보아서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 이상의 것을 말한다.

나. "척추의 심한 운동장애"

부목 또는 가슴동맥 이하가 전부فل허기, 좌수팔허기 및 좌수팔전 운동중 2종류 이상의 운동이 생리학적 범위의 1/3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 "척추의 뚜렷한 운동장애"

목뼈 또는 가슴동맥 이하가 전부, 팔허기, 좌수팔허기 및 좌수팔전운동 중 2종류 이상의 운동이 생리학적 범위의 1/3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라. "척추의 운동장애"

목뼈 또는 가슴동맥 이하가 전부فل허기, 좌수팔허기 및 좌수팔전운동 중 2종류 이상의 운동이 생리학적 범위의 1/3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 14. "손가락의 장애"

가. "손가락을 잃은 것"

첫째손가락은 지장관절(관절에서 첫째마디), 기타의 손가락은 근위지장관절(관절에서 둘째마디) 이상을 잃은 것을 말한다.

나. "손가락을 원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손가락의 원위지장관절(관절에서 첫째마디) [첫째손가락은 말장관(관절에서 첫째마디)의 1/2] 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손가락의 중수지장관절(관절에서 마디마디) 또는 근위지장관절(관절에서 둘째마디) [첫째손가락은 지장관절(관절에서 첫째마디)] 이 완전 강직되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 15. "발가락의 장애"

가. "발가락을 잃은 것"

발가락 전부(사족 발가락의 경우 발톱 이상)를 잃은 것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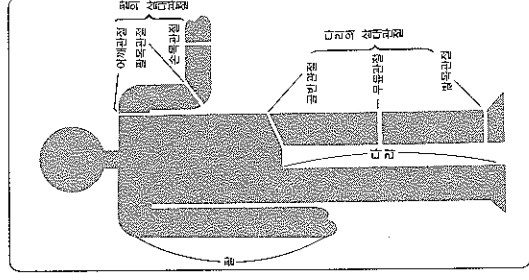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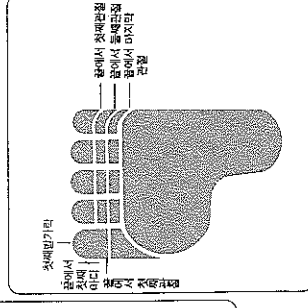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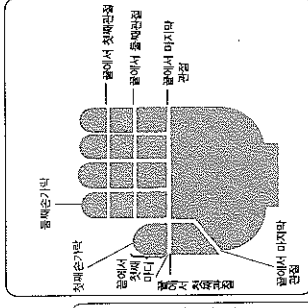
나. "발가락을 원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첫째발가락은 말장관(관절에서 첫째마디)의 1/3이상, 그 외 발가락은 원위지장관절(관절에서 첫째마디) 이상을 잃은 경우거나 중수지장관절(관절에서 마디마디) 또는 근위지장관절(관절에서 둘째마디) [첫째발가락은 지장관절(관절에서 첫째마디)] 이 완전 강직되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 16. "신체의 동요불의"

가. 한쪽의 대퇴골은 아랫관절 이하(손가락, 손목이하, 팔꿈치이하, 어깨이하)를 모두 동요 불의라 한다. 한다리에 대퇴골은 아랫관절 이하(목이하, 발목이하, 무릎이하, 발반이하)를 모두 동요 불의라 한다. 두 다리 또는 좌의 장골에 대퇴골은 목뼈 또는 무릎 또는 발목을 각각 동요불의라 한다.

라. 좌수에 대퇴골은 목뼈 이하를 모두 동요 불의라 한다. 마. 장해등급표표 중 제1급의 5.67.8.9, 제2급의 3.4.5, 제3급의 8 또는 제4급의 12의 장해에 해당하는 경우는 두다리, 왼다리, 오른다리, 10손가락 또는 발가락을 각각 동요 불의라 한다.



MEMO

MEMO

MEMO